

악취 무릅쓰고 빗물받이 준설 구슬땀... “시민 의식 절실”

30도 무더위에도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한창 매일 1~2m 깊이 관로에 쌓인 쓰레기 수거에 총력 음식물부터 반려견 배변까지... “성숙한 시민 의식”

“매일 이렇게 깨끗하지만 하면 폭우 와도 별 일 없겠네”

14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 광주전 옆 편도 4차선 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는 서구청 관계자들이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연신 닦으면서도 묵묵히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을 이어갔다.

파손된 빗물받이 주변에는 빗물이 지면으로 빠져 나가는 흐름을 방해하는 10kg 남짓 여러 개의 돌덩이들이 놓여있었다. 누군가 악취가 새어 나오지 못하게 막아 놓은 악취 차단판을 들춰내니 담배꽂이가 가득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마스크만 쓴 작업자들은 빗물받이 안에서 연신 삽질을 하며 각종 쓰레기를 퍼올렸다. 도구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손으로 한 움큼씩 쓰레기 더미를 집어 들어 포대 자루에 옮겨 담았다.

4인 1조로 한 팀을 이뤄 움직이는 작업팀은 하루 평균 빗물받이 40개를 점검하고 준설한다. 매일 1~2m 빗물받이 관로에서 들어가 쓰레기와 전선을 벌인다.

일주일엔 한 번씩 수거·폐기하는 생활쓰레기·폐기물은 최대 수천 개 이상이다.

강경범 주무관(45)은 “빗물받이를 청소할 때 잡다한 쓰레기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나온다. 빗물이 제때 빠지지 않으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더욱이 유입된 쓰레기들은 고스란히 하천으로 흐른다. 하천에 흘러온 쓰레기를 우리 시민 모두가 그대로 되돌려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깨끗해진 빗물받이를 보고 연신 엄지를 치켜세우는 시민도 있었다.

주민 이정임(67·여)씨는 “매일 이렇게 깨끗하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쓰레기·빗물이 역류하는 걱정은 없었다. 공무원들이 고생 많다”고 미소지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신안교 인근에도 북구청 관계자들이 다용도 복합 차량을 이용해 빗물받이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흡입기로 빗물받이 안 쓰레기를 빨아들이거나 수압센 물을 쏘 마쳐있는 관로를 뚫었다.

북구 하수처리팀 소속 이용연(56) 반장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반려견 배변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빗물받이 내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도 있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준설 작업을 지켜보던 박정균(35)씨는 “매일 거리를 지나며 (빗물받이에) 공초를 버리는 시민들을 보곤 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권철 기자



14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북구청 관계자들이 17톤 다용도 복합 차량을 이용해 빗물받이 내 쓰레기 청소 작업 중입니다. /뉴스



‘사고 나면 참변’ 장의차, 차량종합보험 가입 저조 45명 탑승 버스 사고 시 참변 우려에도 ‘의무’ 책임 보험만 가입 중고차·개조리무진 대다수... 보험사, 수수료·손해를 탓 가입 꺼려 추가 보험 가입 강제 못해... “보험사각 해소 위해 제도 개선해야”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함께 하는 장의차 대다수가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자칫 큰 사고라도 나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에 등록된 장의용 버스와 운구용 리무진 등 장의차는 총 153대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 차량 등록이 된 장의차지만 광주·전남 소재 장례식장과 화장장, 장지 등을 오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역 내 운행 중인 장의차 80~90%가 차량 운행 시 법령상 의무인 책임보험(의무 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책임 보험은 대인·대물배상 보상 한도가 한정적이다.

최대 45명까지 태울 수 있는 장의 버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의무보험만으로는 대물·대인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

책임보험과 달리,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책임보험 보장 내역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무한보상)·대물배상·형사처벌 면제(12대 중과실 제외)까지 가능하지만 장의차는 예외다.

장의차의 경우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원 뿐만 아니라 함께 탄 유족 등 탑승객들도 제대로 탄 유족 등 탑승객들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 내 운행 중인 장의차들은 대부분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10년 안팎 운행한 노후 차량을 구입하거나 중고·고급 외제 리무진을 개조한 차량들이 대다수다. 각 보험사가 차량 연식·주행거리 등이 많고 개조 과정에서 추가 결함 발생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장의차의 종합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의차와 비슷하게 운행 빈도·거리

가 많고 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시내버스는 별도 공제조합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장의차는 사정이 다르다. 장의 버스 중에는 체계적인 보상·지원 등이 가능한 전세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만, 차량 인도 당시부터 보험에 가입한 일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법적 의무가 아닌 종합보험은 장의차 운행 개인과 법인 입장에서 비교해 높은 보험금 부담까지 떠안으며 가입할 필요는 없다.

보험 적격 심사로 까다롭지만 가입자가 안아야 할 금전적 부담 역시 장의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낮은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장의차는 노후 차량이 대부분이라 위험 요소가 있어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인 보험 계약 수수료료를 받지 못한다. 보험료 자체도 다른 차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업자도 꺼린다. 다만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기존 가입 보험이 있다면 계속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정 당국 역시 장의차 운행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외 종합보험 가입을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조건부 허가 사항을 넣을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자체 별 다른 허가 규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전직 장의차 운수 종사자는 “보험사에서 사고 발생 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장의차의 종합보험 가입을 선택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몰던 장의차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수년 전야 뒤늦게 알았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고 밝혔다.

뉴스

인도 위 변압기에 ‘쾅’... 시각장애인, 한전 손배소송 2심도 승소

인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변압기 설치가 장애인 차별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는 갖춰야 했다며 한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한전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A씨는 2023년 3월13일 목포 도심 인도를 걷던 중 한전이 설치한 지상 변압기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한전이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도

1심, 장애인 차별은 아니지만 보행자 사고예방 책임 인정
한전 항소, 2심 “예방 비용이 보행자 손해보다 크진 않다”

로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규정된 인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목포시에도 변압기 전면에 접자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겨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한전은 변압기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 책임만이 있다고 판단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전은 항소심에서 “시각장애인인 A씨가 보행용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 이례적인 이번 사고에 대비해 변압기에 보호장치를 갖춰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 행동의 결과로서 한전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A씨는 거동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이고, 변압기 크기가 상당히 한전도 보행자 통행 장애 초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한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충돌방지대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사고 예방 비용이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 크기와 비교해 부당하게 커 보이지 않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한편 A씨의 사고 직후 한전은 변압기 모서리에 충돌방지대를 설치했고, 목포시의 이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변압기를 철거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